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0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이수진·양문석·김종민

용혜인 · 김문수 · 허성무

민병덕 • 이원택 • 김정호

소병훈 • 박홍배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'핫라인'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 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(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과"를 "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"로 한다.

-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(이하 "응급의료 전용회선"이라 한다)를 개설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·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의2(수용능력 확인 등) ① ·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48조의2(수용능력 확인 등) ① 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 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 번호(이하 "응급의료 전용회선" 이라 한다)를 개설·운영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응급의료 전 용회선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
<u>&lt;신 설&gt;</u> <u>&lt;신 설&gt;</u>	거나담당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.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개설・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u>3</u>	제1형	<u>및</u>	제2항괴	<u></u> 관련	년된
구최	체적인	기준	, 방법,	절차	등
필요	요한 /	사항은	보건복	지부령	형으
로	정한다	7.			

<u>6</u>	제1항부터	제5항까지의	<u>구</u>
<u>정</u> 3	<u> </u>		
	·		